

2026년 3차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변경 공고

해양경찰청 공고 제2026-104호 「2026년 3차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공고」 관련,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제24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 출제범위 및 홍보분야 실기시험 평가기준을 변경하고,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적용사항을 추가 안내하고자 합니다.

2026년 8월 24일

해양경찰청장

□ 변경·추가 안내 사유

- (필기시험) 개정 「형사소송법」이 2026. 10. 2. 시행됨에 따라 수험생 혼란 방지를 위해 형사소송법, 형사법 및 해양경찰학개론의 법령 적용기준 명확화
- (실기시험) 홍보(영상), 홍보(디지털) 분야의 실기시험 평가기준 수정
- (가산점) 취업지원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점수에 대한 안내 보완

□ 변경내용

1. 필기과목 「형사소송법」, 「형사법」 및 「해양경찰학개론(수사부분)」의 출제기준 설정

- 해당 시험일('26. 10. 24.)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('26. 8. 31.) 현재 유효한 법령, 고시, 판례 등을 기준으로 출제합니다. 이점 주지하여 문제 풀이 시 '26. 8. 31.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.
- 채용분야별 해당 과목
 - 경위공채 : 해양경찰학개론, 형사소송법
 - 순경공채 : 해양경찰학개론, 형사법
 - 함정요원 순경 : 해양경찰학개론
 - 수사 순경 : 해양경찰학개론, 형사소송법
 - 해상교통관제 순경 : 해양경찰학개론

2. 홍보(영상), 홍보(디지털) 분야의 실기시험 평가기준 수정

- 「붙임 3. 실기시험 평가기준 및 평가표」에서 채용분야별 주요업무와 평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.

분야	주요업무	평가사항
홍보 (영상)	▶ 정책홍보 콘텐츠(영상, 사진) 기획·제작 ▶ 함정, 파출소 등 현장 채증방법 향상 및 홍보 ▶ 영상물 D/B 관리 * 지방청 및 경찰서 홍보 근무	▶ 정책과 부합하고, 제시된 과제에 적합한 영상제작 능력 ▶ 응용프로그램 활용 수준 ▶ 창의성·메세지전달력·완성도 ▶ 콘텐츠 기획력 및 스토리 구성 능력
홍보 (디지털 소통)	▶ 정책홍보 디지털 콘텐츠 기획·제작 ▶ 홍보소재 발굴 및 확산 ▶ 이슈 대응 콘텐츠 기획·제작 ▶ 디지털 콘텐츠 D/B 관리 * 지방청 및 경찰서 홍보 근무	▶ 정책내용과 부합하고, 제시된 과제에 적합한 콘텐츠 제작 능력 ▶ 응용프로그램 활용 수준 ▶ 창의성·정보전달력·완성도

3.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 안내

- 변호사 분야 [원서접수 마감일(2026.11.9.) 기준]
- 변호사 제외 전 분야 [원서접수 마감일(2026.8.19.) 기준]

- 다음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채용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각 시험 단계별 만점의 10% 또는 5%를 가산

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,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,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,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, ⑤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, 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, ⑦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

-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분야별로 채용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
- 가점대상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이 해당되는 가점 적용 비율을 직접 확인하여 가산요건을 선택·기재하여야 하며, 중복 적용되지 않음

○ 가점비율 오기재,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

※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여부 및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관서에 확인
(보훈상담센터 ☎1577-0606)